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가정통신문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협조 요청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합성 및 유포)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1>	청소년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을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
<사례 2>	청소년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해당
<사례 3>	청소년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p>디지털 성범죄</p> <p>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소지·시청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p> <p>SNS·오픈채팅방·만남어플 등 온라인상에서 친밀해진 상태에서 신상정보, 신체 사진 등을 요구, 이후 태도를 바꾸어 신상정보·사진 유포 및 게시 등 협박하여 추가로 범행</p> <p>불법합성물 제작·배포</p> <p>불법촬영물 소지·시청</p> <p>동의없이 사진·동영상 촬영하거나 유포</p> <p>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이거나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유포 협박을 받을 때 즉시 112 신고하세요!</p> <p>*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월) 자료 발췌</p>	<p>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p> <p>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p>	<p>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p> <p>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p>
	<p>유포 협박</p> <p>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p>	<p>불법합성물 제작·배포</p> <p>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p>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p>이렇게 행동해요</p> <p>만남 요구</p> <p>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p> <p>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p> <p>불법촬영 유포</p> <p>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p> <p>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p> <p>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p> <p>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p> <p>성적 문자 영상 전송</p> <p>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p> <p>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p> <p>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 / 스팸'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p> <p>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p> <p>*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 자료 발췌</p>	<p>도움을 요청해요</p> <p>피해 신고</p> <p>▶ 긴급신고 112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safe182.go.kr</p> <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번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p> <p>▶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특</p> <p>피해 상담</p> <p>▶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8994 / http://d4u.stop.or.kr</p> <p>▶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없이 1366</p>
---	--